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13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종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이윤석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소외 C에게 제1토지 중 2645분의 330.5 지분 및 제5토지 중 826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7. 15. 접수 제33187호로 마친, 소외 D에게 제1토지 중 2645분의 330.5 지분 및 제5토지 중 826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191호로 마친, 소외 E에게 제1토지 중 2645분의 331 지분 및 제5토지 중 826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197호로 마친, 소외 F에게 제1토지 중 2645분의 1653 지분 및 제5토지 중 826분의 12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202호로 마친, 소외 주식회사 G에게 제2, 3토지 및 제4토지 중 2215분의 661 지분, 제5토지 중 826분의 38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203호로 마친, 소외 H에게 제5토지 중 826분의 77 지분 및 제6토지 중 1983분의 109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205호로 마친, 소외 I에게 제5토지 중 826분의 40 지분 및 제6토지 중 1983분의 56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206호로 마친, 소외 J에게 제5토지 중 826분의 24 지분 및 제6토지 중 1983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207호로 마친, 소외 K에게 제4토지 중 2215분의 496 지분 및 제5토지 중 826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208호로 마친, 소외 L에게 제4토지 중 2215분의 397 지분 및 제5토지 중 826분의 2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209호로 마친, 소외 M, N에게 각 제4토지 중 2215분의 330.5 지분 및 제5토지 중 826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321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진주시 O 임야 12793㎡에 관하여 1971. 12. 18.

소유자의 이름이 피고의 한자성명과 동일한 'P', 소유자의 주소가 '진양군 Q'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경정등기 및 소외인들에 대한 이전등기

- (1) 피고와 한글성명이 동일한 원고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신을 가리킴을 전제로, 2017. 6.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였던 '경상남도 진주시 R'로 경정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마쳤고, 2013. 9. 2. 다시 주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 T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 (2) 원고는 2018. 5. 11.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분할한 뒤, 2018. 5.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G 앞으로 201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제1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6. 27. 소외 C, D,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제4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7. 19. 소외 K, L, M, N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제5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5. 17. 소외 H, I, J 명의의, 2018. 6. 27. 소외 C, D, E, F 명의의, 2018. 7. 19. 소외 K, L, M, N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제6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5. 17. 소외 H, I,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을 통틀어 '소외인들'이라 칭한다).

다. 선행소송 경과 및 피고의 이전등기

- (1) 피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이고, 원고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및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6034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2) 위 법원은 2019. 4. 25.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외인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2019. 7. 15.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주위적으로는 소외인들에게, 예비적으로는 원고 본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행소송에 있어서 원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른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원고에게 소송담당의 자격 내지 권한이 없는 때에는 부적법한 소가 된다. 원고는 그 자격 내지 권한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소외인들이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소외인들에 대하여 행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75 판결 등 참조).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주식회사 G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현재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

별지

부동산 목록

1. 진주시 O 임야 2645㎡
2. 위 U 임야 2314㎡
3. 위 V 임야 2480㎡
4. 위 W 임야 2215㎡
5. 위 X 임야 826㎡
6. 위 Y 임야 1983㎡. 끝.

